제7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2. 7.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정 책 과)

목 차

Ⅰ. 용역의 개요 ····· 1

1. 용역의 목적 ····· 1
2. 일반사항 ····· 1
3. 과업의 범위 ····· 2
4. 과업수행지침 ····· 8
5. 보안대책 ····· 10
6. 보고서 제출 ····· 11
7. 용역 수행자 선정기준 ····· 12

Ⅱ.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 14

1. 제안서 평가 방법 ····· 14
2. 제안서 평가 기준(기술평가) ····· 14
3. 제안서 평가 기준(가격평가) ····· 16
4. 입찰자 유의사항 ····· 16

Ⅲ. 제안서 작성 지침 ····· 18

1. 일반사항 ····· 18
2. 제안서 작성 요령 ····· 18
3. 행정사항 ····· 19

Ⅰ. 용역의 개요

1. 용역의 목적

○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대회, 체험 및 전시 관람** 등을 통해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항공**산업의 저변 확대**

* 항공의 날(10.30)을 맞아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

○ 항공레저산업과 **지역의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항공레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2. 일반사항

가. 용역명 : **제7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행사 대행**

나. 행사 내용

○ 기　간 : 2022. 9월 **24일(토) ~ 25일(일)** (* 행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울진비행훈련원 일원)

○ 경기종목 : 드론,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동력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6개 종목

○ 내　용 : 항공레저스포츠 대회(선수), 체험프로그램(일반국민)

* 체험프로그램은 항공과학제작체험, 항공시뮬레이션 체험, 항공레저스포츠 VR 시뮬레이션 및 영상 체험, 항공레저스포츠 전시 및 홍보 등 대회장소에서 체험도 동시 진행

다. 추정가격 : 일금 **이억일천구백구십오만이천원**
(₩ 219,952,000, 총액입찰, 부가세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3. 과업의 범위

1) 일반사항

○ 과업의 범위는「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하 “행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행사의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
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준비 및 유관기관 협의
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라. 행사 기간 중 행사의 원활한 운영
마. 행사 종료 후 정리 및 마무리
바. 행사 결과의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사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본 과업지시서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세부 과업

○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해당 조직의 역할, 참여인력 섭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일(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사 세부계획 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행사 내용(대회 및 체험/전시 등 20개 이상 프로그램)

- 비행쇼, 드론쇼 등 볼거리가 있는 관람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대회・체험・전시 등을 구성하되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포함할 것

구 분	내 용	비고
대회 (6종)	- 장관배 항공레저스포츠대회 · 드론 · 모형항공기 · 패러글라이딩 · 스카이다이빙 · 동력패러글라이더 · 경량항공기	장소 및 기상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체험	- 항공과학제작체험 · 모형(전동)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 에어로켓 등 로켓 제작 및 날리기 · 종이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등 - 드론체험 · 드론 조립 및 조종 체험 - 항공시뮬레이션 체험 · F16 비행 시뮬레이션 · 에어본 어드벤처(스카이다이빙) · 드론 시뮬레이션 등 - 항공VR 시뮬레이션 및 영상 체험 · 항공레저스포츠 VR 시뮬레이션 및 영상(패러, 열기구, 드론 등)	장소 및 기상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전시·관람	- 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전시 · 경량항공기 전시 및 포토존 · 항공역사/미래관 · 항공사 홍보관 · 항공레저스포츠업체 전시 등	장소 및 기상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행사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나. 행사장 운영 계획

- 대회, 체험 및 전시별 최적의 행사장 배치 계획을 포함할 것
- 식음료매장, 간이화장실, 관람석, 의료실 등 부대시설 배치 계획을 포함할 것
- 행사장·부대시설 내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인원 배치 계획을 포함할 것

- 행사장 내 필요한 장비, 기타 물품 등 조달 계획을 포함할 것
- 우천 시 등 악기상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포함할 것
- 각종 위기상황 등 응대를 위한 24시간 현장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 행사장 일대 불법 노점상 통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다. 행사 홍보 계획

- 행사 엠블럼,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 물품 제작 계획을 포함할 것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할 것
- 대회 참가자, 청소년, 가족 단위의 관람객 등 대상별 홍보 계획을 포함할 것
- 홍보 효과를 예측하여 예상되는 참가자 규모를 포함할 것

라. 행사 운영 계획

- VIP 참석자를 확인하여 의전 계획을 포함할 것
- 개·폐회식 행사에 대한 시나리오와(기념사 포함) 단계별 행동 요령을 상세히 작성하여 포함할 것

마. 행사 안전관리 방안

- 행사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대회별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
- 안전사고 등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 행사운영 유관 기관(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인허가 등 업무 협조 및 각종 필요 보험(시설물, 진행요원, 출연진, 관람객 등)에 가입할 것
- 행사장 일대 교통통제 등 주차 질서유지 계획 및 행사장 내 주요 시설 소화기 의무 비치할 것

- 행사기간 도난, 기상악화,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할 것

○ 과업수행자는 행사에 투입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치계획에 따른 운영 인력을 사전에 섭외하여 관리할 것

나. 운영 인력은 관람객과 구분 되도록 별도의 유니폼(조끼 등) 및 명찰을 착용하도록 할 것

다. 운영 인력에 대한 필요 보험을 가입할 것

라. 운영 인력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사전에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할 것

○ 과업수행자는 수립한 행사 세부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많은 국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지자체, 행사 참여업체, 비행훈련원 등과 협조 및 조율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야 하며, 식음료 업체, 자동 판매기 등 먹거리를 다양하게 섭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람객 유치 및 참가자 호응 제고 등을 위하여 경품 추첨행사를 기획하고, 공정하게 추첨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관람객 만족도 및 미흡점 확인 등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 중 행사운영과 관련한 민원 접수, 유실물 보관, 미아 방송 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치는 접근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운영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 중 대회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대회 참가자의 자격증명 소지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사전에 안내할 것

다. 대회 참가자의 비행장치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할 것

라. 대회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인근 응급의료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

마. 대회 장소 내 안전사고 유발 요인 해소 후 대회를 진행할 것

바. 대회 중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 등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회 즉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된 후 대회를 재개할 것

사. 대회 진행 요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 교육을 수행하고 현장에 배치할 것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참가 인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최소 3회 이상 모의 이동하여 행사장 내 안전위해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것

나. 대회 참가자 및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할 것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의료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

라. 행사에 동원되는 요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수행하고,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 연락처를 사전에 공유할 것

마. 행사장 내 시설물 및 관람객의 안전대책,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임대 장비 철거 및 반환, 장소 정비, 쓰레기 배출 등 마무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성과 및 미흡점을 분석하여 계약 종료일 3주 전에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분석의 유효성을 고려하여 유효 표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것
- 행사 운영의 미흡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포함할 것

나. 현장 사진

- 행사별·대회별 사진을 최소 2장 이상씩 포함할 것

다. 행사에 투입된 예산 집행 내역

- 최종 보고서 내 예산 결산표를 포함하고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할 것

라.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자료

- 수립한 안전관리 방안, 사전 안전교육 수행 결과, 보험가입 증서 등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

3) 기타 사항

○ 본 과업에 대한 계약금 지급은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잔금은 사업 종료 후(결과물 제출 시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사

진행 취소에 따른 제반 소요액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지침

1) 일반 수행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의 목적 및 취지 등 행사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의 의도에 맞게 기획, 세부방안 마련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자와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처에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준비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세부사업별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 상 반드시 필요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으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행사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발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 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보안 대책 등을 위반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획·운영·관리에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관련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상변화 등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무리한 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여야 하고, 안전요원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회 행사장 및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행요원, 참가자, 체험 참여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규정을 적용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종목별 고급 수준의 기량 보유자 중심으로 출전자격을 제한(모형항공기는 제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장내 경기장, 체험장 및 관람공간 사이 안전구역 확보 및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단일 경기장내에서 개최가 어려운 종목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인근 이착륙장과 연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기체 지상전시 및 조종석개방 등 일반 국민들이 항공레저스포츠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행사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자는 과업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와 공동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중요 정책 사항,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5.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 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참여자 외 외부 인원과의 회의 시 자료 출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자료를 회수하고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성과물 제작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부수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제작한 성과물에 불량, 오류 등이 확인 되는 경우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용도로서, 소각한 부수 만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6. 보고서 제출

○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수행계획, 참여 인력 및 조직 현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세부 계획 보고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업 지시서 상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과업진척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간 공정보고 : 매주 수요일(서면 또는 구두)
② 수시 공정보고 : 국토교통부가 요구할 경우 서면 및 유선보고

○ 최종보고

- 행사 종료 후 5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과물을 제출할 것
- 최종보고서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것
- 성과물: 최종 보고서(전자파일 및 인쇄본 3부), 설문조사서, 행사 사진집(USB)

7. 용역 수행자 선정 기준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용역 수행자 선정 절차 등 적용 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다.

2)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3) 입찰참가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Ⅱ.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관련 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2)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에 따라 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1) 평가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 평가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건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제안서 발표(필요시, 제안업체에 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예정)

1)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2) 발표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질의응답 시간 제외)로 한다.

3) 발표를 위한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며, 위원용 인쇄물은 9부를 준비한다.

2. 제안서 평가 기준(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 20점, 비계량평가 80점으로 한다.

2) 계량평가(20)는 책임연구원의 경력(20)으로 평가한다.
- 책임연구원의 경력(20)

구 분		배 점
가	- 항공/항공레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 보유자로서 관련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0
나	- 항공/항공레저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 보유자로서 관련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9.5
다	- 항공/항공레저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 보유자로서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9.0
라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 보유자로서 관련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8.5
마	- 그 외 가 ~ 라에 해당하지 않는 자	18.0

3) 비계량평가(80)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가. 사업수행 계획성		**25**					
	○ 행사 운영계획 전반(시설 배치, 개·폐회식 행사 등)	**10**	9.6	9.2	8.8	8.4	8.0
	○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대회 운영 계획	**10**	9.6	9.2	8.8	8.4	8.0
	○ 홍보 계획의 다양성 및 효과성	**5**	4.6	4.2	3.8	3.4	3.0
나. 사업수행 적정성		**25**					
	○ 특화 프로그램(ex.드론쇼 등)의 실현 가능성	**10**	9.6	9.2	8.8	8.4	8.0
	○ 사업 계획의 이행 가능성 및 실행 체계	**10**	9.6	9.2	8.8	8.4	8.0
	○ 사업 성과 평가 방안 및 품질 제고 노력	**5**	4.6	4.2	3.8	3.4	3.0
다. 사업관리 체계성		**25**					
	○ 종목별 대회 운영 방식의 효율성	**10**	9.6	9.2	8.8	8.4	8.0
	○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10**	9.6	9.2	8.8	8.4	8.0
	○ 용역 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적정성	**5**	4.6	4.2	3.8	3.4	3.0
라. 안전 관리		**25**					
	○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및 방안	**10**	9.6	9.2	8.8	8.4	8.0
	○ 대회 종목·체험장별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10**	9.6	9.2	8.8	8.4	8.0
	○ 배치 인원 안전교육 수행 계획	**5**	4.6	4.2	3.8	3.4	3.0

【제안서 평가 총괄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일반 현황 (20)	○ 책임연구원의 경력	20	계량
사업수행 계획성 (25)	○ 행사 운영계획 전반	10	비계량
	○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대회 운영 계획	10	
	○ 홍보 계획의 다양성 및 효과성	5	
사업수행 적정성 (25)	○ 특화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10	
	○ 사업 계획의 이행 가능성 및 실행 체계	10	
	○ 사업 성과 평가 방안 및 품질 제고 노력	5	
사업관리 체계성 (25)	○ 종목별 대회 운영 방식의 효율성	10	
	○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10	
	○ 용역 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적정성	5	
안전관리(25)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및 방안	10	
	○ 대회 종목·체험장 별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10	
	○ 배치 인원 안전교육 수행 계획	5	

4) 평가 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로 산출하고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한 경력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기 계속 용역인 경우에 한하여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 위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기준(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4. 입찰자 유의 사항

가. 「과업지시서」의 수정과 철회

국토교통부는 필요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수정사항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과업지시서」의 수정사항을 통지받은 입찰참가자는 이의 수리 여부를 즉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제안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한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

국토교통부는 제안서 작성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타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 부담 관계에는 최종계약체결 및 착수지시서 발행 이전에 수행되는 모든 사항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관계 법령의 숙지

입찰참가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의 계약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문과 같다.

마.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국토교통부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한다.
2) 위 1)에 따른 입찰의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입찰의 무효 : 입찰공고문과 같다.

사. 계약 방법 : 입찰공고문과 같다.

아. 기타

입찰참가자는 국토교통부가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이 제안서 작성지침은「항공레저스포츠제전」행사대행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입찰참가자가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제안서는 용역을 수행할 최적의 연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본 제안서와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서명

1) 제안자가 제출한 각 제안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자로부터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그 권한과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각 제안서 및 그로 인해 이루어질 계약 관계 서류에까지 법적으로 제안자를 대신할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그 공동수급체 구성에 포함된 자는 제안서 상에서 또는 제안자가 관여하는 모든 계약 하에서 제안자가 부담하게 될 과업과 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구성

1) 제안서의 형식

가) 용지규격 : A4(210×297mm)로 작성(필요시 용지규격 변경 가능)

나) 작성 프로그램 : 한글 2005 이상

다) 글씨크기 : 주제목 18, 부제목 16, 본문 15, 주해 13 point

라) 글자체 : 국·영문 - 신명조(다만, 주해는 중고딕으로 작성)

마) 제본 :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양면 좌편철로 제본(바인더 제외)하고, 총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를 하단 중앙에 명기

바) 제안서 작성 시 일반원칙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97호, 2016.12.27.)」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를 것

나.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1) 과업 제안서 및 요약서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3)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 과업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6조3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자격·업무정지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이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자격·업무정지를 받은 처분기간을 작성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모두를 구분하여 기재

3. 행정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제안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대표자의 인장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함

마.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바. 제안서의 작성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에 따른 기간 계산은 용역 입찰공고문의 공고일로 함

아. 평가 대상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 본 용역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제안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업무정지를 받고 있는 연구원은 해당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차. 제안서 제출 시 참여연구원 경력확인서 및 용역 수행 실적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다만,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1) 회계 관련 : 운영지원과 044-201-3186

2) 기술 관련 : 항공정책과 044-201-4059

<양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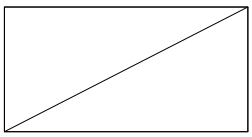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업체명 : (인)

〈양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 (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매 출 액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징계사항			

〈양식 3〉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논문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양식 4〉

행사 관련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양식 5〉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1】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			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투입인력 2】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			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투입인력 3】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			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0000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